

제211회 영등포구의회
2018년도 제2차 정례회

『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
운용계획 변경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12. 13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1호로 2018년 12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도로굴착 복구 물량 증가 및 노후 불량도로 정비 물량증가로 당초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요구(안)

· 수입 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 입 계 획			비 고
	당초 수입액	변경액(증, 감)	변경후 수입액	
합 계	3,682,851	증)480,000	4,162,851	
예치금 회수	1,658,764	-	1,658,764	
이자수입	27,547	-	27,547	
기타수입(부담금)	1,996,540	증)480,000	2,476,540	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

· 지출 계획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	편성목	지출계획			비고
		당초 지출액	변경액(증,감)	변경후 지출액	
합 계		3,682,851	증)480,000	4,162,851	
도로굴착복구	소 계	1,730,020	증)480,000	2,210,020	
	일반운영비	10,405	-	10,405	
	시설비 및 부 대 비	1,719,615	증)480,000	2,199,615	
불량맨홀 정비공사	소계	250,000	-	250,000	
	시설비 및 부 대 비	250,000	-	250,000	
여유자금관리	소 계	1,702,831	-	1,702,831	
	예치금	1,702,831	-	1,702,831	

4. 참고사항

○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-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 불량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감안 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,

지출계획으로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17억 3,002만원, 불량맨홀 정비 공사비 2억 5,000만원, 예치금 17억 283만 1천원 총 36억 8,285만 1천원 편성하였음.

○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

- 상수도 관련 굴착 허가 물량 증가 등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 의뢰한 물량 증가와 노후 불량 도로정비 물량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 변경과 도로복구원인자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
- 수입계획에서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19억 9,654만원을 4억 8,000만원 증액한 24억 7,654만원으로 편성하고
- 지출계획에서 도로굴착 복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1,961만 5천원을 4억 8,000만원 증액한 21억 9,961만 5천원으로 편성함.

○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 하려는 것으로 사업물량 증가 및 기금의 재원인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도로굴

착복구 공사, 불량 도로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■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』
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04.05, 2013.07.25>

-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07.25>
-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